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2.6.5>

구 직 신 청 서(상용)

※ (★)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. (1쪽)

구직인증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일

※ (★)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.

개인정보	성명(★)			주민등록번호(★)
	① 주소(★) (현거주지)	(우편번호 :)		
	② 연락처	전화번호(★) (택1가능)	전화	휴대전화
			무료 문자서비스 [ ]받음	[ ]받지 않음
		전자우편		
			이메일수신 서비스 [ ]받음	[ ] 받지 않음
결혼이민자 여부	[ ]Y [ ]N ※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으로서, 국적미취득자는 체류자격이 F-2 또는 F-5이며, 국적취득자는 종전의 체류자격이 F-2 또는 F-5인 자입니다.(서류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)			

	학교명	전공(부전공)	재학기간	상태
최종 학력사항(★)			년 월 ~ 년 월	[ ]졸업(예정) [ ]재학 [ ]수료 [ ]휴학 [ ]중퇴 [ ]검정고시 [ ]독학사
			년 월 ~ 년 월	[ ]졸업(예정) [ ]재학 [ ]수료 [ ]휴학 [ ]중퇴 [ ]검정고시 [ ]독학사

	근무처	직위	담당 업무	근무기간(연, 월)
③ 주요 경력사항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
이력사항	보유자격				(년 월 취득)
					(년 월 취득)
					(년 월 취득)
					(년 월 취득)
	컴퓨터 활용능력	[ ]문서 작성 [ ]스프레드시트 [ ]프리젠테이션 [ ]회계프로그램 [ ]기타( )			
	외국어 능력	외국어명	수준	공인시험 명칭	등급・점수
			[ ]상 [ ]중 [ ]하		급(점)
			[ ]상 [ ]중 [ ]하		급(점)
	운전능력	[ ]운전가능자 [ ]차량소지자			
	그 밖의 특이사항				

	우선순위	희망직종(★)	희망입사형태(★)	경력	희망직무내용
희망취업 조건	1		[ ]신입 [ ]경력	년 개월	
	2		[ ]신입 [ ]경력	년 개월	
	3		[ ]신입 [ ]경력	년 개월	

희망취업 조건	희망근무지역(★)	1순위 ( )시・도 ( )구・군 2순위 ( )시・도 ( )구・군 [ ] 재택근무 [ ] 관계없음
	고용형태(★) (복수응답가능)	[ ]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[ ]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[ ]시간제 [ ]파견근로
	병역특례취업희망	[ ]현역병입영대상자 [ ]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[ ]공익근무요원
	희망임금형태 및 금액(★)	[ ]연봉 연 ( )만원 이상 [ ]월급 월 평균 ( )만원 이상 (연간총액 ÷ 12) [ ]일급 일당 ( )원 이상 [ ]시급 시간당 ( )원 이상
	그 밖의 희망사항(근무가능 기간・시간, 기숙사・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)	
구직신청 목적(★)	[ ]순수 취업 희망	
	[ ]실업급여 수급	
	[ ]직업훈련	
	[ ]공공근로	
	[ ]기 타( )	
알선희망(★)	[ ]매우 필요 [ ]필요 [ ]필요하지 않음(정보만 이용)	
해외취업 희망여부	[ ]희망함 [ ] 희망하지 않음	

자기소개(특기사항,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.)

워크넷(www.work.go.kr) ・ 자치단체 일자리전산망 공개여부(★)	[ ]전부공개 [ ]부분공개 ※ 귀하가 작성하신 구직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에 공유되어 취업지원에 활용됩니다.
워크넷회원 가입 희망 여부 (비회원만 기재)	[ ]가입 (아이디: , ,) [ ]비가입 ※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7~10자 이내로 하고, 중복확인을 위해 3개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취업희망풀 가입여부 (여성가장, 중증장애인 또는 도서지역거주자만 기재	동의([ ]여성가장 [ ] 중증장애인 [ ]도서지역거주자 ※해당되는 곳에 체크) [ ]부동의 ※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시면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신 경우 장려금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	[ ]공공기관 제공 동의 [ ]민간기관 제공 동의 [ ]부동의 ※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고용서비스우수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상기 '민간기관'은 고용서비스우수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.

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★) (서명 또는 인)